



2020년(2019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20. 4



머 리 말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9년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안내서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비과세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담아 신고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신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목 차

제 1 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소득세의 과세제도

- 1. 소득세 납세의무자 11
- 2. 소득세의 과세방법 11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1. 금융소득의 범위 13
-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3
-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14

제 2 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 1. 이자소득의 범위 17
-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29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31
-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43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 수입시기의 의의 50
-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52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 원천징수의무자 54
- 2. 원천징수세율 54
- 3. 원천징수시기 58
-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61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63
- 2. 채권 등의 범위 66
- 3.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원천징수 67
- 4.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72

제 3 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 1. 배당소득의 범위 79
-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8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100
- 2. 면제(감면)되는 배당소득 106
- 3.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10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114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14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115
2. 원천징수세율	115
3. 원천징수시기	116

제 4 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121
2. 과세기간	121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121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122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125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28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129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131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31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132
4. 배당세액공제	134
5. 기납부세액의 공제	134

제 5 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제1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139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39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40
4.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140

제2절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2
2.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143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147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2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176
4. 금융상품코드 명세 177
5. 금융소득 명세서(확정신고용 참고자료) 제공신청서 179

제 1 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 1 절 소득세의 과세제도

제 2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제 1 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 1 절 소득세의 과세제도

1. 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개인” 이라고 한다)이다.

2. 소득세의 과세방법

-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연간 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소득구분(분류과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된다.
-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73)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제 2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text{금융소득}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소법§14 ③ 6호)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2천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소법§62)

※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 부칙\$2, 1999.12.28. 법률 제6051호)

예 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 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 제 2 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제 3 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제 4 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 5 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 (소법§16)

○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積)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 채권 또는 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다.
- 이자와 할인액
 - ‘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이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 채권 등의 경우는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하여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계산한다.
-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 다음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기간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채
 -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된다.(‘15.1.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예금은 은행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공제회의 예금 등이 있다.
 -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고 신탁에 속한다.

-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특법 부칙§40(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개인연금저축을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다른 금융회사 등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조특법§86 ②,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특법 부칙§41(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법§21 ① 21호)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신용계’는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
-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상호저축은행법§2)

라.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매매”라 함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하며,
 -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우체국 등에서 취급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 규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48, 2002.2.22.)

-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 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이자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16.12.20. 개정)

→ 201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 부칙 3조)

-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 ☞ 고유의 위험보장기능을 가지는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차익
 -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 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이라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이하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소령 25조 ①, 2018.2.13. 개정)

(2) 위의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소령 25조 ⑧, 2017.2.3. 신설)

(3) “보험계약”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2.15. 개정)

- ①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과세대상이 아닌 보험차익(2016.12.20. 개정)

(1)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소령 25조 ③, 2017.2.3. 신설)

-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계약(‘㉠’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령 25조 ③ 1, 2017.2.3. 신설)

- ㉠ 2017.3.31.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 ㉡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소령 25조 ③ 2, 2017.2.3. 신설)

-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 적립식 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 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다음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다음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손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 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소칙 12조의2 ②, 2017.3.10. 신설)

$$\frac{\text{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text{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은 월적립식 보험 계약에서 제외한다.(소칙 12조의2 ①, 2017.3.10. 신설)

- ㉣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손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㉞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을 것

(2)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령 25조 ④, 2017.2.3. 신설)

-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③ 사망시 또는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frac{\text{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text{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times 3$$

(3)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 (1) 및 (2)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1) 및 (2)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1)의 ②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위(1)의①'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위 (2) 연금형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위 (1)중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소령 25조 ⑤, 2017.2.3. 신설)

(4)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 ‘(1)의① 및 ②’의 보험계약과 2013.2.15.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중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아래 ③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다만, 위 ‘(1)의②’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위 ‘(1)의 ②의 ㉠’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1)의 ②의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소령 25조 ⑥, 2017.2.3. 개정)

- ① 계약자 명의를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위 (4)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1)의①’ 및 ‘②의㉢’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위 ‘(4)의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소령 25조 ⑦, 2017.2.3. 신설, 소칙12조의2 ③, 2017.3.10. 신설)

- ① 2017.4.1.부터 체결하는 위‘(1)의②’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1)의②’의 ㉠및㉡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위‘(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② ㉢’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 ② 2017.4.1.부터 체결하는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1)①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 ③ 2013.2.15.부터 2017.3.31.까지 체결하는 ‘(1)①’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1)①’의 보험료 합계액(2억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 ④ ‘①부터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1)②㉠’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은행공제회 등
-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text{초과반환금} = \text{반환금} - \text{납입공제료}$$

- 1999.1.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소령 부칙§4, 대통령령 제14467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할 때 공제회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규 퇴직금으로 수령한 자금으로 일시에 예탁한 자금과 기타 여유자금(부동산매각대금)으로 예탁한 자금도 공제료에 해당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46011-21298, 2000.11.6.)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납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

(이하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아.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貸金)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私債)이자 등을 말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자. 유사 이자소득

- 위 “가” ~ “아”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차.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 위 “가”부터 “자”까지 열거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부터의 이익(소법16조①13, 소령26조⑤, 2017.2.3. 개정)

→ 2017.2.3.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7.2.3. 영 부칙 3조)

-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자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 ①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②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③ ‘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 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 ①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 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③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소통칙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예누리되는 금액
-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
-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text{이자소득금액} = \text{이자수입금액(원천징수하기전의 지급받을 금액)}$

소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소득세법」 제16조 1항 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통칙 25-53...1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 2 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①)
-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6, 2013.1.1.삭제)
-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 아.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 자. 녹색예금의 이자(조특법§91의13 ②, 2014.1.1.삭제)
- 차. 녹색채권의 이자(조특법§91의13 ③, 2014.1.1.삭제)
- 카.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91의14)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타.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 §91의19, 조특령§93의5)

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공익신탁이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환경,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행위에 정한 공익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수탁원분을 초과하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①항 9호, 소령§25 ③,④)

-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 한다.
 - 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

○ 비과세 요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금융감독원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감면세액 추정

-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6, 2013.01.01.삭제)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 요건
 -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으로 2000.12.31. 까지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①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
 - ②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납입할 것
 - ※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 ③ 저축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④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감면세액 추정
 -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 비과세 요건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소유자의 주택자금조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저축상품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가입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 ② 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 ※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감면세액 추징

-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관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한 경우(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는 경우는 해지로 간주)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농어민이 사망한 때, 해외로 이주한 때,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및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동력선 미소유자 등 저소득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이나,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2017. 2. 28. 이후 체결한 계약은 240만원)이며, 월납·분기납·6개월납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 비과세 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가입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 조정, 즉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 , 2019년 : 65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②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가입요건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④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15.1.1.)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아.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가입당시 만20세 이상)등으로 하는 조합(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 ※ 2008.12.31. 이전 발생분까지는 1명당 가입한도 2천만원
 - 2007.1.1. ~ 2020.12.31. 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 2021.1.1. ~ 2021.12.31.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 202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자. 녹색예금의 이자(조특법§91의13 ②, 2014.01.01.삭제)

- 비과세요건
 -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관서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 포함)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 ③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 감면세액 추징
 -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저축취급기관”)이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예금이 비과세요건 중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녹색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차. 녹색채권의 이자(조특법§91의13 ③, 2014.01.01.삭제)

○ 비과세요건

-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 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 포함)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구분하여 경리할 것)
 - ②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 ③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 감면세액 추징

-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채권이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카.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조특법§91의14)

○ 비과세 요건

-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③ 계약기간이 7년일 것(2014.12.31. 이전 가입자는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을 것)

④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③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추정

•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2014.12.31. 이전 가입자는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저축취급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② ① 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2853호,2014.12.23>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14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2015.12.15 신설)

○ 비과세요건의 통보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상기 비과세요건 중 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비과세요건 중 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소득세법 상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소법 부칙§9, 1994.12.22. 법률 제4803호)

○ 다음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1) 1982.1.1.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1.1. 전에 발행한 다음의 채권

- ①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 ②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정발보상채권
- ③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 따른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 ④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 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 공채 및 상수도공채
- 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 개발채권

3) 1991.1.1. 전에 발생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400)만원 (조특법§91의18)

- 개인종합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200만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는 400만원]만큼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소법§14)

-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원천징수
- ②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 42%

- ③ 2017.12.31. 이전에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 ☞ 2018.1.1.이후 발행 시 조건부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원천징수
-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 ☞ 14% 원천징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 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 ⑥ 거주자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소법§14)
 - ☞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9) ☞ 9% 원천징수
- 거주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 신청을 할 것
 -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가입한도(모든 금융회사등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이하(2008.12.21. 이전 가입분 2천만원)
 - 노인, 장애인 등 조특법 제8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명당 3천만원 (2008.12.31. 이전 가입분 6천만원)

- 세금혜택 : 우대세율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를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2001.1.1.)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동 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감면세액의 추징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②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조특법§29) ☞ 14% 원천징수

-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12.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14%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1조의18, 조특법 부칙<제15227호, 2017.12.19.> 제25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정한 농어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비과세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5)

-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 90% 원천징수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1997.12.31.부터 1998년 까지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 ⇨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5)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 ~ 1998. 3.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 ~ 1998. 7.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 ~ 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 ~ 1998.12.29.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음

☞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 계산 시 제외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조의15, 조특령§93)

- 거주자가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단, 거주자가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 비우량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우량채권 판단시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 코넥스 상장주식 주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말한다.

※ 판단시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계약기간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 천재지변
- ㉡ 가입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3 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기를 말한다.
 -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특정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어떤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개인별로 수입시기가 동일한 연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수입시기를 해당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라고도 한다.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시기(귀속연도)가 결정된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 = 귀속연도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금융소득〉

금융자산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자·할인액 중 •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기일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소령§45 3호)	○ 할인매출하는 날 (소령§190 1호)

금융자산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 법인이 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잉여금처분결의일 (소령§46 2호)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소법§131 ①)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과세연도 종료일 (소령§50의2 ①)	○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소령§190 1의3호)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을 말하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시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매 연도별로 개인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같은 시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45 및 §50의2)에 원천징수하므로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에 차이가 없으나 일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령§45, §50의2)

○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유사 이자소득(소법§16 ① 12호) 및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소법§16 ①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② 소법§46 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③ 소법§46 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⑨ 비영업대금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 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⑩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⑪ ① 내지 ⑩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⑫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

■ 비영업대금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령§51 ⑦)

○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이자소득금액 계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99.1.1.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됨

제 4 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127)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들을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한다.
 -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 { 이자소득 지급자(금융회사, 법인 등)
대리·위임을 받은 자

2. 원천징수세율 (소법§129)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 등

- ① 2017.12.31.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30
-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④ 그 밖의 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 : 100분의 14(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25)

(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지급시기(지급의제시기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42(지급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 100분의 90(지급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

예 규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2007.10.11)

-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현행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2000.1.1	2001.1.1	2002.1.1~	2005.1.1~	2013.1.1~	2018.1.1~	2019.1.1.~
비실명 이자	40(90)%	40(90)%	36(90)%	35(90)%	38(90)%	40(90)%	42(90)%
비영압대금의 이익	25%	25%	25%	25%	25%	25%	25%
장기저축·채권의이자	-	30%	30%	30%	30%	30% (‘17.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30% (‘17.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기타의 이자	20%	15%	15%	14%	14%	14%	14%
적용시기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주1) 2000.1.1. 부터 12.31. 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12.31. 이전에 지급한 소득제외,

2001.1.1.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중에 지급하는 소득

주2)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주3)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4)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5)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주6) 20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주7) 2019.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	2018년~	2019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36(90)%	35(90)%	38(90)%	40(90)%	42(90)%
일반배당	20%	15%	15%	14%	14%	14%	14%
적용시기	1998.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13.1.1. 이후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	20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2019.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0%

◆ 신청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의 범위(소법§129 ① 1호 가목, 소령§187)

※ 2017.12.31.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한함

(1)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2004.1.1. 이후 발행분부터)

-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제외한다.
- 2013.1.1. 이후 발행되는 장기채권은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2)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소법 부칙§18, 2003.12.30 법률 제7006호)

종전의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채권 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①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납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
- ②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는 금융회사 등이 설정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으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 포함)이상이고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사채에 투자·운용하는 것

(3) 분리과세신청방법

- ①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소득자는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한다.
- ② 이자를 2회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15% 정도임)
-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0%(채권이자소득 14%)
 - 해당 이자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수취하는 이자소득 등이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

예 규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정기에금을 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재국조46017-82, 2000.6.10.)

-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정기에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3.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원칙

- 이자소득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소법§131, 소령§190)

○ 다음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이자소득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소법§156)에 따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지급을 받은날,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④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⑥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⑦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⑧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단,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2.3. >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5.2.3.)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이 영 시행(2015.2.3.)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 시기는 제190조 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소법§ 46의2)

-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 할 수 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 법 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방 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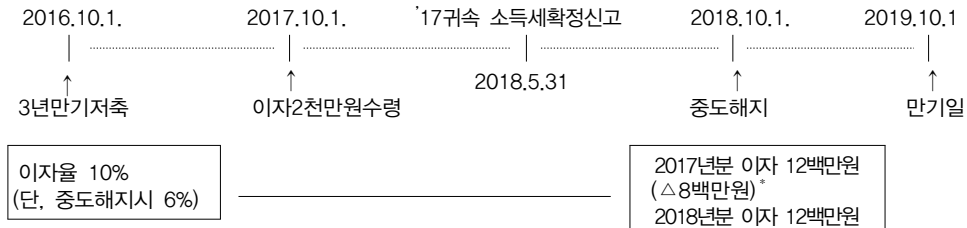
중도해지이자를 이미 지급한 이자와 대응하는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예 규 정기예금 만기전에 지급받은 만기이자의 수입시기 및 정기예금 만기전에 원본에 전입한 만기이자의 수입시기와 이 경우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및 처리방법(서일 46011-10827, 2002.6.21.)

-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사 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저축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자소득 금액이 감소된 경우



* 2017.10.1. 수령한 이자 2천만원과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12백만원(6%)과의 차액 8백만원

해 설 다음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방법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 201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이미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 2천만원 중 중도해지로 감소한 8백만원(2천만원-12백만원)을 2018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방법2 중도해지이자의 귀속연도별로 감액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한 이자소득 2천만원에서 8백만원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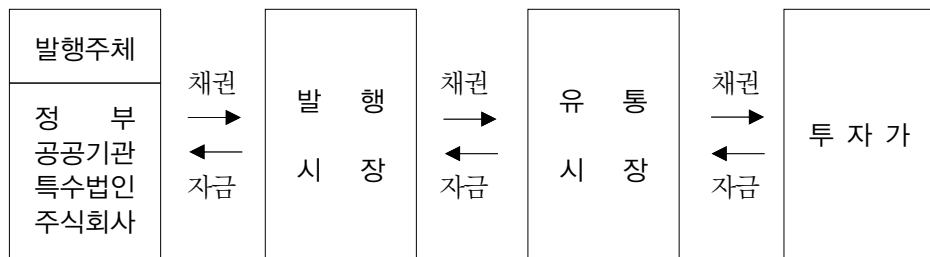
제 5 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채권의 개요

(1) 채권의 개념

-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정형적으로 부담하여 액면가에 따라 단위화된 채무를 표시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2) 채권의 특징

- ① 확정이자부 채권은 발행 당시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의 구입자는 채권 매입시에 향후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 ② 기한부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 ③ 장기채권은 장기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존재성 때문에 유통시장이 존재하여 환금성과 유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채권의 종류

(1)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 ① 국채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등이 있다.
- ② 지방채는 지방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다.
- ③ 특수채는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전신전화채권 등이 있다.
- ④ 금융채는 발행주체가 금융회사 등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 주택채권(국민은행)등과 같이 은행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 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일정조건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보증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보증사채 : 제3자가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하며 이때 제3자인 일정한 금융회사 등을 말하며 발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상환 보증을 한다.
 - 국내 보증기관으로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등이 있다.
 - 담보부사채 : 물적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담보부사채라 하는데 사채의 인수·상환 등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사채 : 담보부사채도 아니고 보증사채도 아닌 보통사채로서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주간사 회사와의 특약에 의해 사채상환을 보증한다.

(2)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 ①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 ② 이표채 :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 ③ 복리채 : 일정기간마다 이자가 단위 기간 수 만큼 계산되어 복리로 재투자되며, 원금과 이자를 만기 일시상환 받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 상수도채권, 일부 금융채가 속한다.

(3) 상환기간에 의한 분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① 단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
- ② 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③ 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

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

-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최종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의제원천징수 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05.7.1.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시에 원천징수한다.

구 분	소득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이자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1996.1.1. ~ 2001.6.30.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2001.7.1. ~ 2005.6.30.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의제 (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시 차액 원천징수 -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시 보유기간분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7.1. 이 후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2. 채권 등의 범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발행법인 등¹⁾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해당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발행법인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가. 채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으로 다음의 증권 등을 포함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②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하며, 해당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
 -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제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어음 (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포함, 상업어음 제외)

나.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

-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등 상당액이 해당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3.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원천징수

가.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 지급의 범위

- 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을 때, 거주자가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때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권 등의 매도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에는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¹⁾은 제외한다.

② 이자 등 지급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 2005.7.1.부터는 채권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 매수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²⁾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정규정은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다만, 2005.7.1. 이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등상당액은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소법 부칙§ 1 및 § 4, 2004.12.31. 법률 제7319호)

다. 원천징수기간의 계산 방법

-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이때 매도일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라.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의 계산

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해당 채권 등의 매수일 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 등의 계산 기간에 약정된 이자 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을 적용한다.
- ㉡ 위 ㉠외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한다.
- ㉢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다만,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 하는 날로 한다.

②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중 해당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 등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보유기간 입증방법

㉠ 채권 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 확인서¹⁾에 의한다.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정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 거주자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바.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적용세율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적용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대해서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지급시기 등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193조의2의 규정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 개념과 성격

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Repo라 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를 역Repo(Reverse Repo)라고 한다.

Repo거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개시일에 유가증권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인수하며, 환매일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최초의 매매대금에 환매이자라 부르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Repo는 일반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대상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매매거래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수한 유가증권의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환매시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부담하는 담보부소비대차거래(secured loan)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세법상 개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①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 포함)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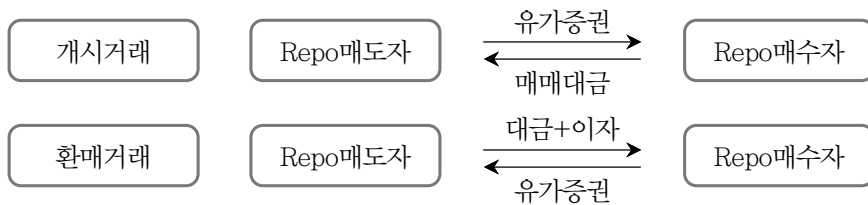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 ① 금융회사 등¹⁾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② 금융회사 등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Repo거래 기본구조〉



○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2의 규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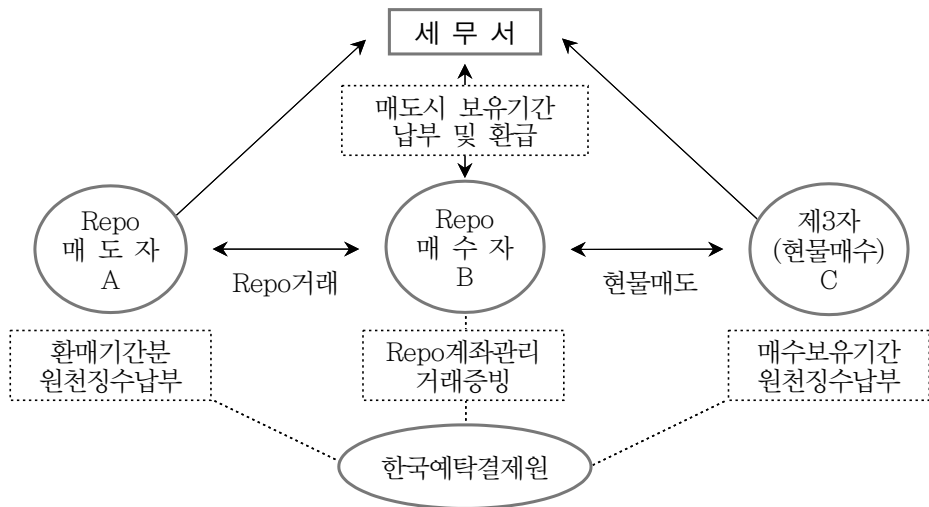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매수자 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에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환급

매수자 등이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 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¹⁾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²⁾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Repo 업무 흐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 4 서식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 3 서식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제 1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 제 2 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 제 3 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제 4 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 1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법§17)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1) 일반적 법인의 배당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이 결산 후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여 분배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통칙 17-0...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예 규 재개발사업 기간중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이 조합해산 전에 분배받은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344, 2003.7.16.)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 되기 전에 해당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 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의 배당이라 함은 거대한 설비를 필요로 하고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가스·수도·운하 또는 대규모 공장 등 회사의 목적사업의 성질상 그 회사가 성립한 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더라도 개업전 일정기간 동안 이자(연 5%를 초과하지 못함)를 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이자의 배당(「상법」 제463조, 삭제 (2011.4.14))

-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연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칙 <제11146호, 2012.1.1> 소법§17 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4.15.부터 시행
 ⇨ 2012.4.15.이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①항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주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 후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시 소득 구분 (소득46011-10085, 2001.2.3.)

-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13)

1.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의제배당

- 형식적으로는 실지배당과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 한다.

<소법§17 ②> 제①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에 따른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text{의제배당금액} = \text{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 - \text{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예 규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 가능 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서이46013-11898, 2003.10.31.)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해당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 자본전입의 경우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text{의제배당금액} = \text{자본(또는 출자) 전입액} \times \frac{\text{소유주식수 (또는 지분수)}}{\text{총주식수 (또는 총지분수)}}$$

<개정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개정취지>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예 규 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1247, 2003.9.5.)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본준비금 (상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3) 법인해산의 경우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text{의제배당금액} = \text{잔여재산의 분배액} - \text{주식 등의 취득가액}$$

예 규 법인 청산중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여부 (서이46012-11406, 2003.7.25.)

-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4) 합병의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text{의제배당금액} = \text{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text{소멸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예 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의 방법 (소득46011-3264, 1997.12.13.)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 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text{의제배당금액} = \text{분할·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text{소멸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6)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지분 상당액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무상주 배당 시 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소득세법 제17조제2항각목)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법인외의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예 규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서일46011-11780, 2003.12.10.)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법인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한 구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② 무상주의 경우

소멸한 주식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 액면가액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인 경우

- 무상주 취득 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주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boxed{\begin{array}{c} \text{1주 또는 1좌당} \\ \text{장부가액} \end{array}} = \boxed{\frac{\text{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 + \text{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계산특례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 초과금 제외)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주 취득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위 무상주와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boxed{\begin{array}{c} \text{1주 또는 1좌당} \\ \text{장부가액} \end{array}} = \boxed{\frac{\text{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취득가액합계}}{\text{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주식수 합계}}}$$

③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㉔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 가액. 다만,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가액

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의 귀속이 주주나 출자자에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에게 귀속시켜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26의2 ①)
 - 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법 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 ㉖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그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
- 위의 요건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위 각호(㉔,㉕,㉖)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소령§26의2 ②)
-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소령§26의2 ③)
 - 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 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 배당소득으로 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26의2 ④)
 - ㉙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법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및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제외)

- 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㉕ 위 ㉔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¹⁾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령§26의2 ⑤)

- ㉖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㉗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㉙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제외)의 집합
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소령§26의2 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소령§26의2 ⑧)
 - ㉠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으로 구성된 경우
 -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 ㉤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위 ㉠에서 ㉣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령§26의2 ⑨)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다.(소령§26의2 ⑩)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소령§제26의3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¹⁾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시행규칙 제14조)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① 과세표준 기준가격(과표가)의 정의
 -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주식·장내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 ② 결산·분배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text{Min}(\text{분배금}, \text{과표가}^* \text{ 증분} \pm \text{유보손익})$
 - * 분배·환매·매도시 과표가 - 매수시 과표가
- ③ 환매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과표가 증분 \pm 유보손익
- ④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 $\text{Min}(\text{과표가 증분} \pm \text{유보손익}, \text{실제 매매차익} \pm \text{유보손익})$
- 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times 보유 증권수) - 수수료

사.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예 규 중국의 유한공사로부터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이 46017-12347, 2002.12.27.)

- 거주자가 중국에 유한공사(제조업)를 설립 운영하여 해당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유한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아.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차. 유사 배당소득

- 기타 위 ‘가’ ~ ‘아’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주식대차거래)(소령 §26의3 ④)

카.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 위 ‘가’ ~ ‘차’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소령 §26의3 ⑤)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 ㉠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배당부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배당 소득등”)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 하는 계약일 것
 - ㉢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이루어진 해당 금융회사가 배당부 상품의 배당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 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 등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2)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text{배당소득금액} = \text{배당소득} + \text{배당소득} \times \text{11/100}^{1)}$$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③ 의제배당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3)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한다.(소법§17 ③)

1.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1) 배당가산율 : 2011.1.1.이후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1(2009.1.1~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2)을 적용한다.(소법§17 ③)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¹⁾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위 1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지분소각익은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여부 관계없음)에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 증자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제 2 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 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마.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④, 2014.1.1. 삭제)
-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 요건
 -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일 것
 -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제출서류

- 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⑩)

○ 비과세 요건

- ① 「농협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 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일 것
- ②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 ③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

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회사(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으로서 2020.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 2021.1.1. ~ 2021.12.31.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 2022.1.1.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라.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비과세 요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함)에 2010.12.31. 까지 가입하여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일 것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 ㉞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
 - ②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가입자 전원이 위 ㉞ 또는 ㉞에 해당할 것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 ④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 ⑤ 계약체결일 이후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것
- 감면세액 추징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㉞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 배당소득×100분의 20
 - ㉞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위 ㉞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 [배당소득×100분의 20]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 추징제외 사유
 - 가입자인 재외동포가 사망한 경우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제3호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을 해지하는 경우
- 제출서류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을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 또는 ㉣의 서류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 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마. 녹색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 비과세요건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 ③ 1명당 가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 감면세액 추징

-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이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 다음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이자소득편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참조
 - ① 개인연금저축의 배당(조특법§86)
 - ② 비과세종합저축의 배당(조특법§88의2)
 - ③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91의14)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400)만원(조특법§91의18)

- 개인종합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200만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는 400만원]만큼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공익신탁이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환경,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행위에 정한 공익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수탁원본을 초과하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면제(감면)되는 배당소득

-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 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68)
- 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②, ③)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중 2021.12.31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분리과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text{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times \frac{\text{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text{총소득금액}}$$

②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text{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times \frac{\text{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text{총소득금액}}$$

- ③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②, ③)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68 ④)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분리과세(14%)
 -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frac{\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text{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②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부대사업등소득·식량작물재배업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frac{\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text{부대사업 등 소득금액} +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121의2 ③) (2014.1.1.삭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특법 부칙 §64(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4.1.1. 법률 제12173호

-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③)
-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6)
-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9)
-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5)
- 바.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사.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14)
- 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14)
- 자. 비실명금융소득(소법§129)
-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③) ⇨ 5% 원천징수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 소득 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12.31. 까지 지급받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 5% 원천징수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2021.12.31. 까지 지급받는 과세연도별로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6) ⇨ 5% 또는 14% 원천징수

- 거주자가 임대주택(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에 자산총액 중 50%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단,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19.1.1. 이후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과세적용)
 - ※ 제87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2014.12.31. 까지 지급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9) ☞ 9% 원천징수

- ☞ 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참조
- ☞ 2015.1.1.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5) (2014.1.1.신설)

-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 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참고 (P.43)

바.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5% 원천징수

- 분리과세 요건
 -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2010.12.31. 까지 가입하여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 ※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 요건 등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부분 참조

사.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14,③,4)

☞ 14% 원천징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한다.

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14,③,6)

- 거주자의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 비실명금융소득(소법§129) ☞ 42%, 90% 원천징수

- 비실명금융소득으로서 지급일(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명전환기일(1993.10.12.)을 경과할 때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조의18, 조특법 부칙<제15227호, 2017.12.19.> 제25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정한 농어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제 3 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이자소득편 참고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46, §50의2)

배당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전입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유사배당(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은 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 과세연도 종료일
의제배당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전입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인정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제 4 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127)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①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③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 90%
 -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조특법§91의18): 9%

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0%

☞ 다만,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배당소득이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	2018년~	2019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36(90)%	35(90)%	38(90)%	40(90)%	42(90)%
일반배당	20%	15%	15%	14%	14%	14%	14%
적용시기	1998.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13.1.1. 이후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	20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2019.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0%

3. 원천징수시기

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 **예 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무상주 상당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333, 2000.3.11.)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함)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임.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소법§131)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법령§106에 따른 소득처분)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③ 의제배당(소령§191)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수입시기 참조)
 -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⑥ 그 밖의 배당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참 고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소령§191 제1호 의제배당)

- 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제 3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 1 절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거주자
 - 개인(자연인),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과세기간

-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가. 거주자

- ①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과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한다.
 - 국내금융소득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법§122·§124·§125)
-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소법§122)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 조세협약에 의한 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와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

②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

(-)

③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42,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 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구의 배당(5%,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원,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등

(=)

④ 종합과세 금융소득

- 1)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 2)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제 2 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1.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①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②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①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 ④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⑤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 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⑧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⑨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 ⑩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 ⑪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 ⑫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⑬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이자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조특법§91조의13)
- ⑭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94.12.22. 소법 부칙§9)
- ⑮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② 실지명의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42%)
- ③ 2017.12.31.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14%)
- ⑥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또는 25%)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①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14%)
 - ☞ 2010.1.1. 이후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15년→7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2010년부터 수해방지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②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③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④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⑤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5%)
- ⑥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 14%)
-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이자·배당(14%)
-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원,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9%)

※ 조건부과세대상

- ① 2016.1.1. 이후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② 2017.1.1. 이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2000.12.31.까지는 20%, 2001.1.1. 이후 15%)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 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2.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 국내에서 받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합산한다.

3. 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1)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2009.1.1. ~ 2010.12.31. 기간의 배당소득분은 12/100)을 가산 (Gross-up)하는 금액이다.

☞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 공제)하게 된다.

(2)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③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 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 Gross-up 적용 요건

-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일 것
- ㉢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분일 것

(3)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 Gross-up되는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②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③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부터의 이익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④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1%의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 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⑤ 법인세 면제 등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 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⑥ 분리과세 배당소득

⑦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⑨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 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제 3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①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text{산출세액} = (\text{금융소득 2천만원} \times 14\%) + (\text{종합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 ②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귀속연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연도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율 구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 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과세 방식)

㉠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2%)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 원천징수세율(14%)

$$\text{㉠} \left(\begin{array}{l} \text{기준초과금액*} + \text{금융소득외의 다른} \\ \text{종합소득금액} \end{array} - \text{종합소득공제}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 + \text{㉡} \text{ 종합과세기준금액}(2,000\text{만원}) \times 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 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부분만 Gross-up을 적용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text{㉠} \text{ 금융소득} \times 14\% \text{ (비영업대금이익 25\%)} + \text{㉡} \left(\begin{array}{l} \text{금융소득 외의}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 \end{array} - \text{종합소득공제}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위 ②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4. 배당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령§116의2)
 -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법§17조③단서)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 ① 배당가산액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배당소득 × 11/100('11.1.1.이후 배당 소득분)
 - ※ '09.1.1.~'10.12.31. : 12/100

5. 기납부세액의 공제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 자 료 >

(1) 2019귀속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 계 산 >

-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 배당가산(Gross-up)대상 금액 : 30,0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770,000원**
 -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 14%) = 18,770,000원
 -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원
-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원) = 3,615,000원

제5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제 1 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 2 절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5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제 1 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소법§164 ③)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소령§214 ③)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③ 법인
- ④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분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이자·배당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81)
- ㉠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제 2 절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법§133, 소령 §193)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①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 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가. 개 요

-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지급 내용(지급 명세서)을 통보하는 것과 별도로 예금주에게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 상황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써 그 동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하도록 하였으나,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이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법인명을 우편·통장기재·정보통신 등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소법§133, 소령§193 ③)

나. 시행방법

- 통보 기관 : 금융회사 등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통보 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금융소득자가 해당된다.
- 통보 내용 :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당국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득자 모두가 세액계산 및 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이 포함된다.

- 통보 주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소득발생연도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연 1회 일괄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 자율에 의한 추가적인 수시통보도 가능하다.

다. 통보 방법

- 원칙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내역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를 통보해야 하지만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① 통장 및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합계액과 세목, 세목별 원천징수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또는 법인명)를 기재
 - ②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통보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4. 금융상품코드 명세
5.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문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문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채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해야 하는지요?

문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니까?
-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니까?
-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니까?
-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니까?
-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의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문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문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5-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 됩니까?
-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5-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이자소득인지 세후이자소득인지?
-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문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19.3.10.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6-3] 2016.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19.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문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7-3]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7-4]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문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문9. 신고 · 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문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10-4]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으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채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답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text{금융소득}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 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이라함)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라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답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율)	22.0% (2.2%)	20.0% (2%)	15.0% (1.5%)	14% (1.4%)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 납부, 835만원 수령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2%)로 종합과세 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19.3.10.인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18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19.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19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0년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16.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에금이 2019.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에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19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19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0년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 (1) 2019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 ② 회사채이자 : 50,000,000원
 -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 = (8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 + (20,000,000 \times 14\%) \\ & = (7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 = 12,756,000 + 2,800,000 = 15,556,000\text{원} \end{aligned}$$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text{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사례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1) 2019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 원
 - Gross-up 금액 = $50,000,000 \times 11\% = 5,500,000$ 원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 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2천만원 × 14%)
 $= \{(70,000,000 + 5,500,000 - 5,100,000) \times 24\% - 5,220,000\} + 20,000,000 \times 14\%$
 $= 11,676,000 + 2,800,000 = 14,476,000$ 원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외 금융소득금액 × 14%)
 $= (30,000,000 \times 25\%) + (60,000,000 \times 14\%) = 15,900,000$ 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참고》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2천만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합니다.

① 이자소득 → ② 배당가산 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사례 3】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19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 = (6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text{원} \end{aligned}$$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 60,000,000 \times 14\%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 = 8,400,000 + (24,900,000 \times 15\% - 1,080,000) = 11,055,000\text{원} \end{aligned}$$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1,000\text{만원} - 210\text{만원(소득공제)}] \times 6\% = 474,000\text{원}$
 - ② $370\text{만원} \times 14\% = 518,000\text{원}$
 -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2011~2019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1.1.~2010.12.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배당가산액(Grosss-up 금액)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 ☞ 자세한 내용은 [7-2] 계산사례 참조

답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9년 금융소득은 2020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0.5.1.~2020.6.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왼쪽 상단에 'My NTS' 메뉴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발행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	----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⑪-1 거주지국코드	⑬ 신택 이의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 어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 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연	월	일	연	월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유의 사항

-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표시를 하여,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인(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인(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 인	내 국 인	주인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인등록번호	111
		주인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인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인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 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 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331
기 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⑩-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 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비과세, 면제	개인					종합과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 없는 법인 소득)
	분리과세					일반과세 (Gross-up)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38%)	일반 과세	기타 세율	일반 세율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 부징수포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채 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밖의 원천 징수대 상 외 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 § 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 § 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 § 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 § 17①3, 법인세법 § 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 § 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5)	15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 § 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 § 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 § 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 § 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19 2호, 법인세법 § 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 § 16①9)	19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 17①8)	5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 § 16①10)	20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1, ELS)	6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 § 16①10)	21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2, DLS)	6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1)	22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②)	62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④)	23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7①9)	63										
환매조건부채매대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 114의2②)	24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7①10)	64										
그 밖에 급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6①12)	25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 § 93 1호)	65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3)	26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 § 93 1호)	27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 14④)	PA										
개인연금저축(소득세법 § 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 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세법 § 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소득세법 § 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 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법 § 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세법 § 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세법 § 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소득세법 § 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세법 § 21①2)	PF										
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세법 § 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87의6)	SG	비거주자들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 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소득세법 § 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세법 § 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세법 § 88의4③)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 66②, 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세법 § 88의4④)	SJ	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 67②, ③)	PJ										
조합 등 출자금(소득세법 § 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소득세법 § 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소득세법 § 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소득세법 § 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 § 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91의6)	SO	발행일~상환일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래채권(소득세법 § 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 § 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 91의8)	SQ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 129②2분문)	PQ										
장기주식형저축(소득세법 § 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 § 129②2 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소득세법 § 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낸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 93의2)	PV										
재외동포연용 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소득세법 § 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 제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PX										
재형저축(소득세법 § 91의14)	SW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5)	S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할 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소득세법 § 91의18)	SZ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세법 § 104의27)	SY	기타	ZZ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세법 § 87)	TA												
장병내일준비저축(소득세법 § 91의19)	TB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세법 § 87의7)	TC												

작성방법

20. ㉑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㉒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종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㉓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 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을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원금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을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을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㉔ 지급대상기간란: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㉕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을,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 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㉔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 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㉖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㉗ 소득세·㉘ 법인세·㉙ 지방소득세 및 ㉚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금융상품코드 명세

소득의 종류	금융상품코드			
13 14 17 (예금 등)	원화	A	정기예금	01
	외화	B	정기적금	02
			상호부금	03
			주택부금	04
			저축예금	05
			기업자유예금	06
			ELD	07
			기타저축성예금	08
			MMDA	09
			CMA	10
			기타요구불예금	11
			조합등 예탁금	12
			일반 예탁금	13
			신용계	14
			신용부금	15
			예금보험공사 개산지급금	16
			기타	17
11 12 15 16 (채권 또는 증권)	원화	A	일반국채	21
	외화(국내발행)	B	STRIPS(소령§22의2①)	22
			물가연동채(소령§22의2③)	23
			지방채	24
			특수채(토공, 도로공, 수공, 예보 등)	25
			지방공사채	26
			금융채	27
			유동화SPC채	28
			일반회사채	29
			전환사채(소령§193의2③)	30
			교환사채(소령§193의2③)	31
			신주인수권부사채 (소령§193의2③)	32
			상환사채(상법 령§23)	33
			파생결합사채(상법 령§24)	34
			이익참가부사채(상법 령§21)	35
			조건부자본증권(자본법§165의6)	36
			예금증서(소령§102①1)	37
			기업어음	38
			표지어음	39
			발행어음	3A
		상업·무역어음 일반매출	3B	
		기타채권	3C	
63			상환사채(상법 령§23)	33
			파생결합사채(상법 령§24)	34
			이익참가부사채(상법 령§21)	35
			조건부자본증권(자본법§165의6)	36
19 20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A	개인연금보험(조특법§86)	41
	손해보험	B	연금보험(조특법§86의2외)	42
	제3보험	C	변액보험(보험업법§108③)	43
			그 외 보험	44
			불특정금전신탁(공·사채)	46
25	원화	A	불특정금전신탁(공·사채)	46

소득의 종류	금융상품코드				
51 56 (법인배당)	대주주*	A	내국법인 상장	51	
		B	내국법인 비상장	52	
	소액주주		외국법인 상장	53	
			외국법인 비상장	54	
53 (의제배당)	대주주*	A	감차이익(소법§17②1, 법법§16①1)	61	
		B	자본전입(소법§17②2, 법법§16①2)	62	
	소액주주		해산 잔여재산 분배(소법§17②3, 법법§16①4)	63	
			합병차익(소법§17②4, 법법§16①5)	64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타 주주 지분비율증가(소법§17②5, 법법§16①3)	65	
			분할차익(소법§17②6, 법법§16①6)	66	
55 (집합투자기구)	원화	A	국내 공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71	
		B	국내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2	
	(ETF의 경우)			국내 사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73
				국내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4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75
				국내 투자신탁형 ETF	76
	원화 (국내 상장주식만)	C		국내 투자회사형 ETF	77
		D		해외 공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78
	원화(기타)			해외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9
				해외 사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80
				해외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1
				해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2
				해외 투자신탁형 ETF	83
				해외 투자회사형 ETF	84
				역외 공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85
				역외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6
				역외 사모투자신탁·투자(의명)조합	87
				역외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8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9
				역외 투자신탁형 ETF	8A
		역외 투자회사형 ETF	8B		
61 (기타파생 결합증권)	원화	A	증권(소령§26의3①1호 외)	91	
		B	통화	92	
	외화			농산물(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 포함, 이하 같음)	93
				축산물	94
				수산물	95
				임산물	96
				광산물	97
				에너지	98
				신용위험의 지표	99
				기타	9A
		복합	9B		

* (대주주) 내국법인의 경우 소령§157④에 따른 대주주, 외국법인의 경우 각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 세율이 달라지는 기준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를 뜻함

* 집합투자기구 중 ETF(□76, □77, □83, □84, □8A, □8B)의 경우 A 또는 B가 아닌 C, D, E, F 중 해당되는 코드를 적습니다.

5. 금융소득 명세서(확정신고용 참고자료) 제공신청서

금융소득 명세서(확정신고용 참고자료) 제공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	⑤ 휴 대 전 화
대리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전화번호	☎	⑩ 신청인과 관계
⑪ 요청 자료의 내용		() 명의로 제출된 ()년 귀속 금융소득 명세서	
위와 같이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참고하고자 국세청에 제출된 ()의 금융소득 명세서(확정신고용 참고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금융소득 명세서를 제공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득 명세서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명세서 제공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수령증 (년 귀속 금융소득 명세서(확정신고용 참고자료))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위 본인이 20 . . . ()세무서에 제공을 신청한 금융소득 명세서를 20 수령하였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20 위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본 수령증은 제공받은 금융소득 명세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2019년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발행일자 : 2020년 4월

발행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김 일 환

국세조사관 정 희 석

국세조사관 김 요 왕

세무사 이 중 민

인쇄 : 도서출판 태봉(☎ 02-2274-0383)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국세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